

제3장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방안

이희수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상임이사)

1. 문제제기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은 21세기판 뉴딜정책이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미래성장 트랜드임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성장동력은 기업가 정신 계발과 금융인프라 구축임.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조직특성과 정책특성에 맞는 자원-자본시장 개발이 필요 하며 지자체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 지자체 중심의 지역기금 형성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 찾기
- 충남 지역기금개발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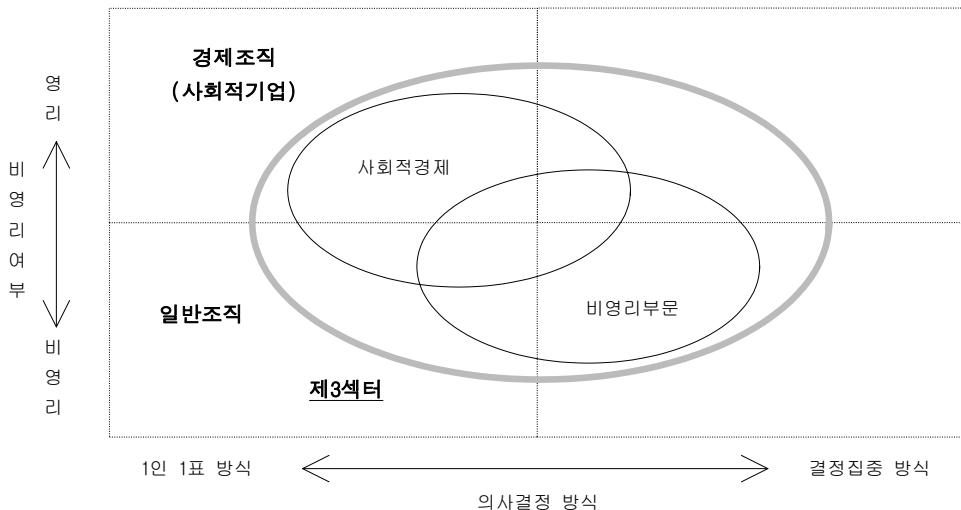
2.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 제3섹터란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을 포괄하는 실용적 범주임

- 사회적경제부문은 수익창출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조직의 목적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기존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조직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며, 주로 협동조합이나 공동조합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며, 특히 많은 조직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비영리민간부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등이 주요한 행위자가 되나, 반드시 1인 1표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전제하지 않음.
- 그 결과 제3섹터의 주요한 행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어느 한 조직 형태에 근거하지 않으며, 제3섹터 개념이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제3섹터내의 다양한

조직 형태를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임.

<제3섹터에 대한 하나의 정의>



출처: 노대명, 이태리 사회적기업법의 정체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2009.에서 인용.

2)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제3섹터의 양대 범주를 구성하는 비영리섹터와 사회적경제는 민간이 공식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는 점, 조직운영상 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발적 가입 및 참여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나 다음 3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첫째, 비영리기준에 관한 차이점으로 비영리조직 접근은 제3섹터 조직이 이윤이나 재무적 성과를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사회적경제 접근은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들이 조합원들에게 잉여의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영리기준이 제3섹터조직의 필수적인 아니라고 간주함.
- 둘째, 민주주의 기준에 대한 차이점으로 비영리조직 개념하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않는 조직도 제3섹터에 속하지만, 사회적경제 개념하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은 제3섹터에서 제외됨. 예를 들면, 병원, 대학, 학교, 문화 및 예술단체들이 민주주의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비영리조직 개념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시장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비영리조직 개념하에서는 이들이 제3섹터에 포함되는 반면에 사회적경제 개념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준의 차이점으로 사회적경제 개념하에서의 모든 조직의 주요한 목적은 사람들 혹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에, 비영리조직 개념하의 조직들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우선적 목적은 아님.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특성에 대한 비교>

구분	제3섹터의 '유럽식'개념 이해	제3섹터의 '미국식'개념 이해
개념	민간단체의 유형과 특성뿐만 아니라, 모든 '비영리추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분석적 접근 강조	모든 비영리조직들로 구성된 섹터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심을 두는 분류적 접근 강조
성장환경	사회적경제	시장경제
비영리 기준	구성원에 대한 제한적 이윤분배와 공동체 이익 추구	이익비분배 원칙이 중심이며, 협동조합 및 상호공제조합 배제
의사결정	다중의 이해관계자 참여	이사회, 운영위원회등 제한적임
활동목적	대인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수혜	미션중심의 모든 비영리활동
조직형태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비영리단체
전략적 주도세력	사회적경제부문/정부	비영리재단과 사회책임기업
지향가치	between and beyond	between
법적프레임 워크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른 다양한 법적구조 개발	비영리단체의 상업활동 허용과 세제상의 혜택

3)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를 성장기반으로 하나 질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개념임.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부문을 개발하는 혁신동력에 관한 문제이자 새로운 기업조직형태로서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등장에 관한 문제임.
-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의해 제3섹터내의 조직들 또는 비영리조직이 새롭게 혁신된 것으로서, 기업가적 마인드와 혁신적인 경영기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조직임.

- OECD는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정의함.
-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함.
-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은 기업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목표인 사회적 혹은 환경적 미션을 이행하는 조직 또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유럽 각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회적기업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이나 협동조합보다 새로운 유형의 혁신조직인 사회적기업의 이니셔티브 조직에 잘 적합하도록 개발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과 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같은 정의를 따를 경우, 사회적기업에는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 공동체회사, 마을기업, 소셜벤처, 소셜비지니스, 마이크로파이낸스 나아가 거의 모든 비영리기업과 심지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영리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음.
- 반면 좁은 의미로 보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법제도적으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대부분 좁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것임.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을 기업적 방법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제3섹터의 중심에서 그 잠재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3섹터는 사회적경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3섹터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가적 정신의 개발이 필요함
- 제3섹터 발전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관료체제와 독과점적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비영리부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어촌과 지역중심으로는 사회적경제영역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제3섹터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목적성, 기업지향성, 혁신적 사고로 무장한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함.

3. 사회적기업 금융의 특성과 역할

1) 사회적기업 금융의 특성

- 실물경제와 금융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로서 금융조달은 사회적기업 육성의 핵심요인임.
- 대기업과 IB금융, 중소기업과 중소금융, 서민경제와 서민금융이 동반개발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정책에는 그에 걸맞은 금융정책이 적절하게 개발되고 있지 못함.
- 제도권 금융은 사회적기업을 정보비대칭성의 문제, 금융공급에 따른 높은 신용위험도,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진 부문으로 금융상의 투·융자 회피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개정 추진중.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성장보다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투자리스크를 공동부담하는 지속성장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함.

- 사회적기업 금융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기업의 자본시장의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자본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 사회적기업은 제도권시장인 금융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본 조달과 함께 정부, 영리재단으로부터 기금지원, 융자 등의 자본 조달을 받는 구조를 가짐.
- 해외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에서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금융과 공동체개발을 위해 조성된 지역기금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자본시장과 연계.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마중물 역할을 할 내셔널 펀드를 규모 있게 조성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저소득 대안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금융조달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전국적, 지역적 모금 채널은 부재한 상태임. 정부가 정책기금조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대기업들과 시민들의 기부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부문의 미발달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기반과 금융조달시장이 취약함.
- 해외국가의 사회적경제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과 민간재단 펀드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소셜금융을 축적해 온 반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금융과 지역금융과 분리된 속에서 혁신을 위한 자본축적이 지연되어 왔음.
-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재투자법에 의한 지역개발금융기구들이 사회적기업을 프로모션하

고 있으며 유럽역시 다양한 목적의 지역개발펀드들이 지역공동체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지역금융의 축소와 후퇴는 더욱 심화됨.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풀뿌리 공제회, 사회적 조직간의 컨소시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내 협동조합금융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 있음.

2)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

- 사회적기업의 자본시장은 크게 시장적 자본조달과 비시장적 자본조달등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장적 자본조달의 대표적인 형태는 응자와 투자유치이고 비시장적 자본조달의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보조금과 모금으로 이루어짐.
- 현재 사회적기업의 자본조달방식은 주로 응자와 정부보조금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나 모금등에서 취약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단체와 환경, 청소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모금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부문에서도 기업의 기부금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성금모집등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전문모금단체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기업 자본시장의 구조 >

	구 조	재 원
시장	1. 일반시장에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상품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지불
	2.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로부터의 이용료	이용료의 유형에 따른 수혜자의 지불능력
	3. 공익연계마케팅 (Cause Related Marketing)	기업 상품 및 서비스 촉진을 위한 캠페인
	4. 금융기관으로부터 응자 (Loan)	금융기관의 응자금
	5. 투자자로부터의 투자금 유치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비시장	1. 현금이나 물품의 기부	개인 및 기업 기부자
	2. 공공지원 : 서비스 계약, 보조금 (subsidy), 그랜트(grant) 지원	중앙 및 지방 정부
	3. 기업 내부 예산 : 스폰서십(sponsorship)	기업의 후원 계약에 따른 일정 지원금

자료: 양용희, 사회적기업 민간기금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2011. 인용

3) 자본조달방식에 따른 기금, 응자, 투자의 장단점

-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랜트, 응자, 투자, 모금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성격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장점과 단점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설립초기, 성장기 등 시기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의 정도에 따라 자본의 지원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맞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 기금, 응자, 투자의 장점과 단점 >

	장점	단점
기금	<p>기금은 지원기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p> <p>기금은 자체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유용한 지원이 될 수 있다.</p> <p>기금은 자산 수입을 위한 자산 구입으로 사용될 수 있다.</p> <p>기금은 수익창출이 없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기금은 상업적 지원을 통해 불가능한 혁신적이거나 문제를 지닌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p>	<p>기금은 일년 단위의 단기적으로 지원되므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힘들다.</p> <p>기금사용은 기업이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프로젝트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p> <p>기금 획득에 높은 경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획득 과정이 관료적이거나 시간, 기술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p> <p>기금지원자는 지속적인 사업이나 장기지원보다는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p> <p>기관이 사회적목적 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여 프로그램을 전개할 위험이 있다.</p> <p>기금을 획득하면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해 최선의 사용을 하기보다는 획득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다.</p> <p>기금은 유동적이지 못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면 획득하기 힘들다.</p> <p>기금의 신청, 승인, 사용 사이에 많은 시간 소요.</p>
응자	<p>응자는 사용에 있어 기금보다 자유롭고 응자는 기금보다 획득하는데 빠르다.</p> <p>응자획득은 기금처럼 경쟁보다는 신청자의 자격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p>	<p>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장비와 같은 자산의 안정성을 심사하므로 사회적기업이 자산이 없을 경우 응자받기가 힘들다.</p> <p>응자는 기금과 달리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채권자는 사회적기업의 과거의 재무 상태를 보기 때</p>

	어지며, 융자는 재무관리, 상업적 목적 수행 등과 같은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 영향을 제공	문에 사업초기에는 융자받기가 힘들다.
투자	<p>융자보다 대규모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p> <p>보증이나 담보가 필요없다.</p> <p>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p> <p>경영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다.</p>	<p>투자자와 사업 경영권을 나누어야 하므로 설립자와 투자자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p> <p>사회적기업의 법적, 경영권의 구조는 투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사회적기업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높은 성장이나 투자회수와 같은 실적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p> <p>투자자는 미래에 그들의 주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수입의 보장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p>

자료: 양용희, 사회적기업 민간기금조성과 금융지원활성화방안, 2011. 인용

4)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금융의 역할

- (투자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제공하는 투자가로서의 역할
- (혁신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금융프로그램과 소셜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혁신가로서의 역할
- (가치평가전문가) 기업별, 프로젝트별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고, 위험을 가격으로 전환하는 역할
- (지역사회재건과 사회통합의 촉진자) 제도권 금융이 회피하는 낙후지역과 베톱경제(Bottom Economy)에 대한 소셜금융 제공으로 지역공동체사회의 재건과 소외그룹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

4. 국내외 사회적기업 금융 현황과 특징

1) 국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금융지원 현황

□ 고용노동부 대부사업

- 고용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대부사업을 추진한 바, 2008년 50억, 2009년 30억, 2010년 60억 총 140억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수행함
- 고용부의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연대은행, 근로복지공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나눔재단, 사랑사랑등 민간수행기관이 정부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

□ 미소금융재단 대부사업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12월 기준 8천억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동안 2조를 조성하여 연간 2000억원의 기금을 마이크로크레딧에 사용하기로 함.
- 2010년 연간 MC 집행규모는 1,150억 정도이고 이 중에 사회적기업 대부사업기금은 2000억 기준 4.3%인 49억 4천만원이고 2011년 100억으로 확대.
- 운영방식은 함께 일하는 재단, 민생련, 열매나눔재단등 민간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부사업

- 영리법인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50억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100억으로 확대키로 함.
- 지원방식은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와 ‘제조업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집행된 것은 4억 5천만에 그침.

□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미래에셋사회적기업투자펀드

- 고용노동부 25억을 모태자본으로 하여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사가 되어 42억규모의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조합 결성
- 기금중 60%는 사회적기업 관련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수익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연평균 10억 미만 투자)

- 투자방법은 CB, BW 발행으로 하고 조합 존속기간은 7년이고 투자기간은 4년, 회수기간은 3년으로 설정함

관련분야

- 지난 10년간 민간분야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시장규모가 누적 1500억 규모로 확대되어 왔으나 2009년 하반기 미소금융재단 출범 이후 정부주도 마이크로크레딧은 급증했으나 이에 반해 민간영역규모는 현저하게 감소추세 보이거나 퇴조현상.
-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자체들이 매칭으로 2조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조를 보증하는 서민대출금융상품인 햅살론 출시했으나 정체상태.
- 중소벤처 정책자금은 매칭펀드로 전환한 2005년 이후 6년간 총 1조 2,691억 원의 씨드머니로 민간자본시장과 결합한 5조 규모의 투자조합펀드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2) 민간차원의 금융지원 현황

-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이 미소금융사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이동중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은 대부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집중되고 있음.
- 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등 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음.
- SK, 삼성, 현대차, LG전자, 효성, 강원랜드, 포스코, LH, 산업은행 대우증권 등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출연
- 기업의 사회공헌실태(전경련(2008), 사회공헌백서): 경상이익대비 사회공헌 비용이 '04년도 193개사 1.9%에서 '08년 208개사 4%로 증가 추세

<전경련 기부처별 기부현황>

(2008년, 백만원)

구분	자선출연 재단	시민단체 등 NGO	주요 모금단체	국가·지자체	기타	총계
기부액 (백만원)	218,518	179,525	68,327	82,099	209,194	757,663

-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2000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의 2조 9천억원에서 2009년에는 9조6천1백억원으로 3.3배 이상 증가함.

- 2009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부총액은 3조4천6백억원으로 지난 10여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차원의 기부금이 급속히 증가함.
- 최근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사회공헌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적절한 투자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공헌의 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기금개발이 필요함.

(3) 민간지원단체의 금융지원 현황

- 사회연대은행 소셜금융펀드 10억 조성, 씨즈 소셜벤처펀드 4억 조성운영,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Sopoong 50억 조성, D³ Jubilee, 사회투자지원재단 공동체기금등
- 옥션머니, 팝펀딩, 콘크리이트등 온라인 SVC 투자모델 운영
-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부평 자활공제회, 건설공제조합등
- 한살림, 두레생협, icoop 생협등 전국 3대 생협과 원주, 구로, 성남등 협동조합네트워크

2) 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융 현황

- EU 차원에서 520조 규모의 유럽소셜펀드(ESF, 2017-2013) 조성하여 현재 120조 규모를 유럽각국과 지역에 매칭펀드로 지원.
ex)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ESF 4조 6천억에 영국정부 매칭자금 4조 6천억을 플러스한 9조 2천억이 투여됨.
- 영국의 경우에는 퓨처빌더스펀드(CIC분야기금), 피닉스펀드(빈곤지역지원펀드), Plunkett Foundation(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CAN 메자닌 펀드(제3섹터조직에 공동사무공간 임대사업), Unlimited 펀드(혁신적사회적기업가에게 공모시상제 지원금 제공), 빅소사이어티 뱅크, Charity Bank등 정책목표에 따른 정부기금과 민간금융 지원인프라 구축
-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영금융기관기금(CDC기금;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지원,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지원), France Active, France Initiative 등 마이크로파이낸스 펀드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 구축

- 미국의 경우에는 SVP 인터내셔널, 아쇼카재단, 스콜재단, 드래퍼 리처드 재단, 에코잉 그린, 아쇼카재단, 아큐먼 펀드등 4만개의 재단과 지역재투자법(CRA법에 따른 공동체 개발금융기구(CDFI),가 제3섹터와 사회적기업 육성을 프로모션.
-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마르코니 협동조합 기금, CGM 재정 컨소시엄 기금,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상업적 금융기관, 윤리은행, 사회적 책임투자기금등 소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 방글라데시아의 그라민뱅크, 그라민트러스트, PKSF펀드(7천억 규모), 브락(Brac)등이 제3 섹터와 사회적기업,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3) 주요국가의 소셜투자금융 사업분야

- 소셜 투자·융자사업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에 소셜투자를 통해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 금융투자와 경영컨설팅사업 병행연계
 - * 미국의 소셜벤처캐피탈인 에코그린, 아쇼카재단, 드래퍼 리처드 재단, 켈버트 재단 벤치 마킹
- 멘토링 파트너스 사업
 - 자선벤처와 경영파트너쉽 연계
 - * SVP, CAN, 아쇼카재단, 씨즈 모델 벤치마킹
-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링 및 리모델링사업
 - 소셜프란차이즈, 지역개발, 클러스트조성 등 프로젝트성 사회적기업
 - * 영국의 'SEL'. 'Plukett 재단'과 미국의 '칼리지서밋'. '실리콘밸리 소셜벤처' 벤치마킹
- 협력사업
 - 제3섹터 및 소셜벤처기업들에게 공동의 사무 공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 영국의 CAN(Community Action Network), 더허브(The Hub) 벤치마킹

5.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추진배경

-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최적의 대안모델이자 21세기판 뉴딜을 선도하는 메가트랜드로 등장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에서 고용창출과 사회문제해결의 임팩트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
 - 국내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워킹 웰페어'와 지역공동체 재건과 사회통합의 뉴패러다임으로 등장
 - 사회적기업 육성 시행 5년만에 사회적기업 532개, 예비사회적기업 1,005개등이 설립되고, 사회적기업 육성 운동이 고용노동부에서 범부처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사회적기업부문에서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음.
- 정부,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2008-2012)에서 민간자원 개발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투자기관 육성, 추진키로 함.
 - 대형 비영리재단과 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지원 펀드 조성 추진
 - 사회적기업의 상법상의 회사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 등 기존제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이후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법개정 추진키로 함.
 - 지자체에 설치하는 복지재단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를 구축하거나 지역 새마을 금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별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역투자기관 육성 추진
- 정부, 지자체, 민간차원에서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기업 성공의 핵심요소로 주목하고 소셜금융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시작
 - 정부, 사회적기업투자펀드(42억)설립, 미소금융 (100억), 중진공 (100억), 새마을금고 희망 드림론(300억규모), 500억 규모의 대출자금 조성하기로 함
 - SK세상(500억), 삼성(200억), 삼성 SGS, LG녹색에너지기금(25억), 효성 철린저기금, 강원 랜드(20억), 현대차(30억), 포스코, LH마을만들기(10억), 산업은행(10억), 대우증권(3억)등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조성 출연
 - 인천광역시, 경기도등 지자체 차원에서 광의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금(지역재단등)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풀뿌리기금, 소셜벤처캐피탈, 소셜금융, 소셜 P2P 펀드등이 개발되고 있음.

2) 사회적기업 금융정책의 필요성

-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지역사회개발, 소셜비즈니스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개발에 필요한 투·융자와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지자체 차원의 투자펀드의 조성
- 중앙정부예산에 의존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전략을 내울 수 없으므로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티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권역별 위탁된 13개 중간지원기관 활동하고 있으나 지역적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SE, CB,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소셜벤처등의 R&D역량 구축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금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 도래.

- 사회적기업 금융으로 사회적기업의 혁신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벨트 구축
- (지역,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및 핵심역량 구축
- 전략적 프로젝트 사업군의 모델링 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제3섹터에 걸친 자원동원
- 소셜벤처 파트너쉽으로 다양한 벤처자산과 멘토링 역량 결합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 엔진 장착

- 민관산학의 다양한 금융재원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소셜금융 TOOL을 개발
- 개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비영리 지역공익재단 검토
- 사회공헌기금, 기부금, 후원금, 엔젤투자금, 사업수익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의 개발
-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관산학의 금융 인프라를 소셜밸류체인으로 연계하여 금융, 경영, 마케팅 등 자원개발

6. 지역기금 조성방안

1) 추진필요성

- 충청남도가 향후 4년간 200개 사회적기업과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할 시에, 도 예산 48억(국비매칭된 2011년 추정예산)규모 외에도 최소한 매년 민간차원에서 50억 정도의 재원이 개발, 투여되어야 할 것임.
 - 2011년 7월 현재, 충청남도 인증 사회적기업 17개, 예비사회적기업 63개이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가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형 사회적기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도예산 48억원은 대부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인건비지원에 투여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임
 - 고용노동부형 인증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농어촌 공동체개발,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셜벤처등에 대한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50억 이상의 민간재원이 투여되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별화된 지역경쟁시대로 돌입
 -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시키고 앞으로 정책조정 업무와 지원제도 마련 그리고 사회적 환경조성에 매진하기로 정책방향 설정
 - 중앙정부 차원의 모태펀드 42억, 중진공, 미소금융, 새마을금고 등 500억 규모의 대출 자금 조성하기로 했으나 추진속도 느리고 지역적으로 자금분배나 혜택이 미미함.
 - 따라서 충청남도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형 사회적기업의 전국적 메카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독립적인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함.

2) 지역기금의 TOOL에 대한 방안

- 충남도청 산하기관에 지역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 관주도에 대한 논란 및 정치적 쟁점화로 사업추진 지연
 - 지자체나 관주도로 기금사업 추진시 민간부문의 참여가능성 낮아 재원마련과 민간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예상됨.
 - 운영상의 비효율성 증가로 공공예산(도비) 부담 증가

- 민관협력의 독립적인 지역공익재단으로 지역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거버넌스형 지역재단을 설립을 추진한다.
 - 민관파트너쉽으로 민간재원 참여의 명분과 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 기부금이나 출연금 조성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 충청남도는 민간공익재단의 마중물(씨드머니)로 지역기금의 30%(또는 50%)를 출연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자원 개발을 최대화한다.
 - 지역내의 공익재단, 기업, 대학, 기업재단, 농협, 신협, 수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들도 매칭방식으로 출연·참여한다.

3) 지역기금의 법적형태별 장단점과 주요특징

□ 장단점 비교

구성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이 기피하는 사업을 효율성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조세 혜택, 사회적자원 동원, 다양한 네트워킹에 유리함 ○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공익목적의 기금 TOOL로 적합하며 다른 재단이나 창투사등과 연계하여 투자펀드나 모태펀드 참여가능 ○ 사단법인과 달리 공익사업에 필요한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장이 기피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최적화한 방식으로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금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나 사회적마인드와 다양한 네트워킹에 익숙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에는 법인 10%, 개인 30% 소득공제 ○ 법정기부금단체시 등록시 법인 50%, 개인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출자자들로 경영되는 중소기업, 펀드, 투자회사 등의 기업 형태에 적당 ○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진행의 원활 ○ 금융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할 경우 민간 주도형 혁신모델 가능 ○ 단일유형의 모태펀드 결성만 가능 ○ PEF식 투자조합결성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참가자격 없으나 창투사와 컨소시엄 구성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늦고 사단구조로 인하여 책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재단법인에 비해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불리 ○ 모태펀드 참가자격 없음. ○ 투자조합결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C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투자성 SVC 조달 인프라 취약 ○ 국내 정서상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불리 ○ 단일투자조합만 결성 가능하고 다모델조합 허용은 창투사 라이선스 필요 ○ 지역차원의 경험과 정서상 적합지 않음

□ 주요특징 비교

구 성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 등
법적근거	민법32조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수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특별법에 의한 법인 적용을 받는 다양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민법 32조 의거)	
형태	특별법의거 관주도형	휴면예금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각종공적기금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2011년 3월 11 일 상법 개정안 이 국회 회의 통과 2012년 4월 경 부터 시행
	민관파트너쉽형	함께일하는재단 노사발전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주도형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 기업재단		
	종교재단형	열매나눔재단, 해피월드복지재단		
기부금 세금공제 사항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나 조특법 폐지되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원화함.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및 허가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 2010년 조세특례법상의 기부특례제도 폐지되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원화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등 100%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허가 추진(2011년 7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시 개인은 30%, 법인은 10% 소득공제 적용)
 - *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데 법인설립허가, 등기, 홈페이지 개설등 추천요건과 제출서류등 요건충족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 * 사회적기업투자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 법정기부금단체로 격상하여 추진하는 것 검토필요(미소금융중앙재단은 법정기부금 단체 등록 추진중)

4) 효과적인 지역기금 설립방안

- 충청남도 지역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이며 공익법인으로 설립(민법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 충청남도가 씨드머니를 출연하고 지역의 민간역량이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쉽 방식의 비영리 민간공익재단방식으로 지역기금(재단)을 설립한다.
-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가칭)충남사회적기업투자재단'에 씨드머니 기금 출연하고 민간기업들과 지역의 공익재단들 역시 컨소시엄 법인에 참여하도록 독려 한다.
-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재단 설립에 대한 정책, 예산, 사업조정등은 경제통상실이 총괄하고 정책실행과 집행등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차원의 T/F단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 충남도내 4개 시.군의 대기업 참여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기반의 협동조합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 충청남도 산하 16시군에 대해서는 출연단계 또는 사업집행단계에서 매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시군의 자발성과 협동적 경쟁을 견인하도록 한다.

5) 재원조달 방안

□ 출연금

- 2012년도에 50억 규모의 재단 출연금 확보로 재단운영의 안정성 확보
- 충남 30%(50%), 관내금융기관 30%, 대기업 40%, 민간재단 9%, 일반시민, 충남출신 기업인 등으로부터 출연
- 매년 재단 출연금 30%씩 증액발행
- 대기업이 유치된 4개 시.군의 기업들과 관내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금융기관, 민간시민, 중소기업인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원개발

□ 사업재원

- 2012년도부터 연간 50억 이상의 기탁금, 위탁금, 컨소시엄자금 등 운영자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 2012년도부터 충청남도와 민간지역재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풀뿌리 민간기금 모금운동 전개로 지속적인 사업재원 확보

□ 재원의 구성

구분	내용	비고
기부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조성된 자금	
출연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조성한 출연금	
위탁금	상환의무가 없는 재원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으로부터 받은 위탁자금	
기타자금	수익사업에서 얻은 재원	

6) 지역공익재단 설립의 타당성-왜 민간공익재단방식의 지역재단인가?

- 자체체, 기업, 서민금융, 민간협회 등 다양한 센터의 재원과 자원의 펀드레이징에 효과적이며 대외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음.
- 공익적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법적형태로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수입구조의 다양한 포토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기부금 출연시 15% 운영비 활용으로 재단운영의 비용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제도권 금융과 제3센터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캐피탈로 사회적기업 부문의 대안적 IB기능을 담당하는데 적합한 모델임
- 인내자본, 벤처자선 등 장기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에 유리함

7) 운영방향

- 지역차원의 펀드레이징, 자산운영, 컨설팅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컨설팅 재단으로 포지션화
- 비영리공익재단으로 비영리,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조직운영에 기업가적 경영기법 적용
- 비영리민간공익재단 취지에 맞게 이사회 구성도 50% 이상을 민간부문에 할애하여 관주도 지역재단이 아닌 민관거버넌스형 지역재단으로 디자인화.
- 민관산학간에는 물론 16개 시군과도 매칭펀드 전략으로 협력과 경쟁의 원리 도입하여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정신 고취 및 자강자립역량 강화

-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역량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지원
- 재단운영의 공정성,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하여 지속적인 자원개발 확보
- 펀드레이징과 법정기부금 단체지정에 유리한 비영리공익재단 법인으로 출발
- 지역재단 우산 속 포토폴리오 구성이라는 방식으로 기금운영모델 설계하여 기금별로 사회적 명분과 가치 부여